

창작물 공모전 지침 (안)

I. 목적

본 지침은 '창작물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응모자(저작자)와 공모전 주최자(이용자) 사이의 공정한 저작재산권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II. 적용 범위

본 지침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 주최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저작물의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도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의 발생(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납본이나 기탁 또는 등록 등)을 요구하지 아니함

III. 근거

-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지식 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조 제2호)
- ② 정부는 지식재산을 창출한 개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지식재산 기본법 제19조)
- ③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 ④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⑤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모전 요강은 공모전 주최자(사업자)가 여러 명의 저작자(상대방)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

IV. 공모전에서의 권리관계

1. 저작권 귀속

- ①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저작권법 제10조)

※ 응모작의 저작권 일체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고지한 공모전 요강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할 수 있음

●예시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잘못된 예

-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자에게 있다.

- ② 공모전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공모전 주최자는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한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잘못된 예

- 수상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재산권은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 출품작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주최자가 가진다.

- ③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응모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가 부담할 수 있다.

●예시

- 응모자가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을 요구한 경우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응모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응모자의 부담으로 반환한다.
- 응모자가 응모작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주최자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한다.

2. 이용허락

- ① 공모전 주최자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당 입상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주최자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이용허락의 조건(독점 또는 비독점 이용·이용 방법·기간·횟수·장소·이용매체·이용허락의 대가 등)을 결정하여 공모전 요강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허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대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상금·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상세 내용 3. 정당한 대가 참조).

●예시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사전에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 주최자가 관리하는 누리집, SNS 채널(구체적으로 특정)에 게재할 수 있다.
 - 어문저작물(소설, 시, 논문 등)
·주최자는 입상작을 주최자의 누리집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 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
·주최자는 입상작을 ()년간 (복제/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다.
·주최자는 입상작(CI/BI/캐릭터)을 홍보 목적에 한하여 ()년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전시/공중송신)할 수 있다.
- ※ CI, BI 공모전과 같이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에 대한 독점적, 장기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공모전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저작권산권 양도를 받는 것을 권장함.
- 건축저작물
·주최자는 입상작의 설계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건축물을 제작할 수 있다.
 - 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
·주최자는 입상작을 ()년간 복제·전송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 요강에서 공고한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하여 입상작을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입상자와 **별도로 합의**하여야 한다.

●예시

- 주최자는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입상작을 복제 및 전송할 수 있고,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한 이용허락을 얻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
- 주최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입상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입상작을 이용한 수익 창출행위를 할 수 있다.
- 주최자는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잘못된 예

- 주최자는 입상작을 필요에 따라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입상작은 향후 2차 가공 등을 거쳐 활용될 수 있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예시

-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 드라마, 영화 제작

③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 발표 후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별도의 합의를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예시

-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저작재산권을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3. 정당한 대가

- ①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경우, 입상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대가는 거래 관행 및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공모전 주최자가 공모전에 투자한 비용과 입상자가 공모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점들을 참고할 수 있다.
- ②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의 입상작 이용의 경우 정당한 대가는 시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용 범위는 공모전의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예시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상작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 (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공모전 주최자는 이용허락 및 저작권 양도에 대한 정당한 대가(시상금 또는 상품 등)를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관행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 그 보상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는 이용허락 및 저작권 양도가 무효화될 수 있음.

※ 공모전 입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으로, 원칙적으로 입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입상작의 사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사용 범위가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면 불공정하지 않음(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4. 저작인격권의 존중

- ①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할 때에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다.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고, 그중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다.

※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모전 입상작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과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이 문제될 수 있다.

- ②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상작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성명표시의 예외,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의 변경에 대한 권리)에는 예외적으로 저작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입상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 ※ 주최자가 저작물을 창작적으로 변형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V. 분쟁 해결

- ①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문언의 내용·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 ② 응모자나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예시

- 공모전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응모자 및 주최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모전 주최자는 응모자가 공모전의 저작권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의신청 절차 및 창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

- 입상작의 저작권에 관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000의 담당부서 000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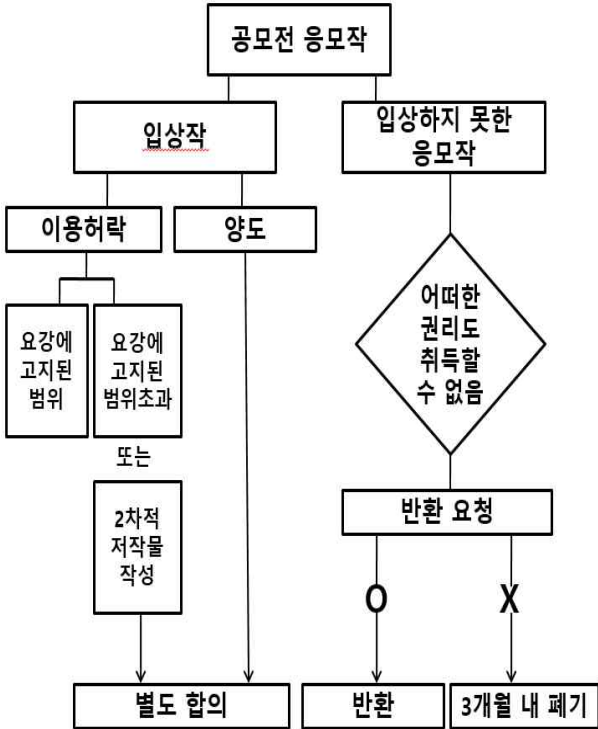
- ④ 공모전 주최자는 공모전의 응모자가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모전 요강에 주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예시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VI. 참고자료

공모전 요강 작성 전 확인 사항



공모전 요강 예시

■ 기간 : 0000.00.00.~0000.00.00

■ 응시대상 : 000 000 000

■ 주최/주관 : 00000/00000

■ 유의사항/기타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권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최자는 입상작(최우수작/우수작/입선작)에 한하여 (영리/비영리 목적으로) ____년 동안 (독점적으로/비독점적으로) _____할 수 있다.
(*예 : 주최자는 최우수작·우수작을 ()년 동안 독점적으로 복제·전시할 수 있다, 입상작은 홍보를 위해 ()년간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향후,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나, 공모전 요강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예 : 저작권재산권의 이용허락만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입상작을 변형하는 등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_____ 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 :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000의 담당부서 000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향후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응모작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주최자는 입상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원칙적으로 저작자인 입상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입상작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가 부담할 수 있다.

공모전 저작권 관련 질의응답

Q1 응모작의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 A.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예를 들어 등록·납본·기탁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Q2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요?

- A.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는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Q3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 A.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 중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Q4	이용허락과 저작권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

- A.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이용허락 (저작권법 제46조)을 받거나 저작권재산권을 양도 (저작권법 제45조)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행위(복제, 배포, 전송 등)를 허락받는 것으로, 저작권 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Q5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와 동시에 주최자에게 귀속되나요?
----	--

- A.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공모전 요강에 고지한 내용만으로 응모작의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은 부당하므로,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Q6	주최자가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고자 할 경우, 공모전 요강 외에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A.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양도의 기간은 어떠한지, 저작권에 대한 양도의 대가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통해 응모자(저작자)와 공모전 주최자(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균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조율하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Q7	공모전 입상작의 저작권 양도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고할 만한 양식이 있을까요?
----	--

- A. 저작권 양도 합의를 진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저작권 표준계약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입상작의 상금과 입상작 이용(또는 저작권재산권 양도)에 따른 대가는 다른 것인가요?
----	---

- A. 입상 작품에 지급되는 상금·상품 등의 혜택은 원칙적으로 입상 작품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상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최자가 공모전에 관한 다수 응모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으로 판단됩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다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이 공모전 개최 목적이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 8. 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따라서 공모전 주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입상작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범위가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입상작 이용 대가는 상금 또는 상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Q9	입상작의 저작권재산권 이용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

- A. 저작권재산권의 이용 대가를 정해 놓은 법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권재산권의 이용 대가는 당사자의 합의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입상작의 이용 범위, 공모전 개최 목적, 일반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이용허락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경우 이용허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